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 후 변 화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4. 12



국토교통부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정부의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21.2.4),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22.8.16)」 정책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광주광역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주거,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이 가능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지구는 고속철도(KTX호남선, SRT), 무안-광주고속도로 등을 통한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송정KTX역을 중심으로 서부권으로 이동중인 광주시 개발축선상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인접하여 수요여건이 양호하고 어등산과 장수천 및 가야제 등을 지닌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심 인접 지역임

1.2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1.2.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별표 2] ③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그 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
사업규모	1,682,965㎡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2]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의 종류 중 “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3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마.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계획 승인 전
사업규모	1,682,965㎡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 3]

1.3 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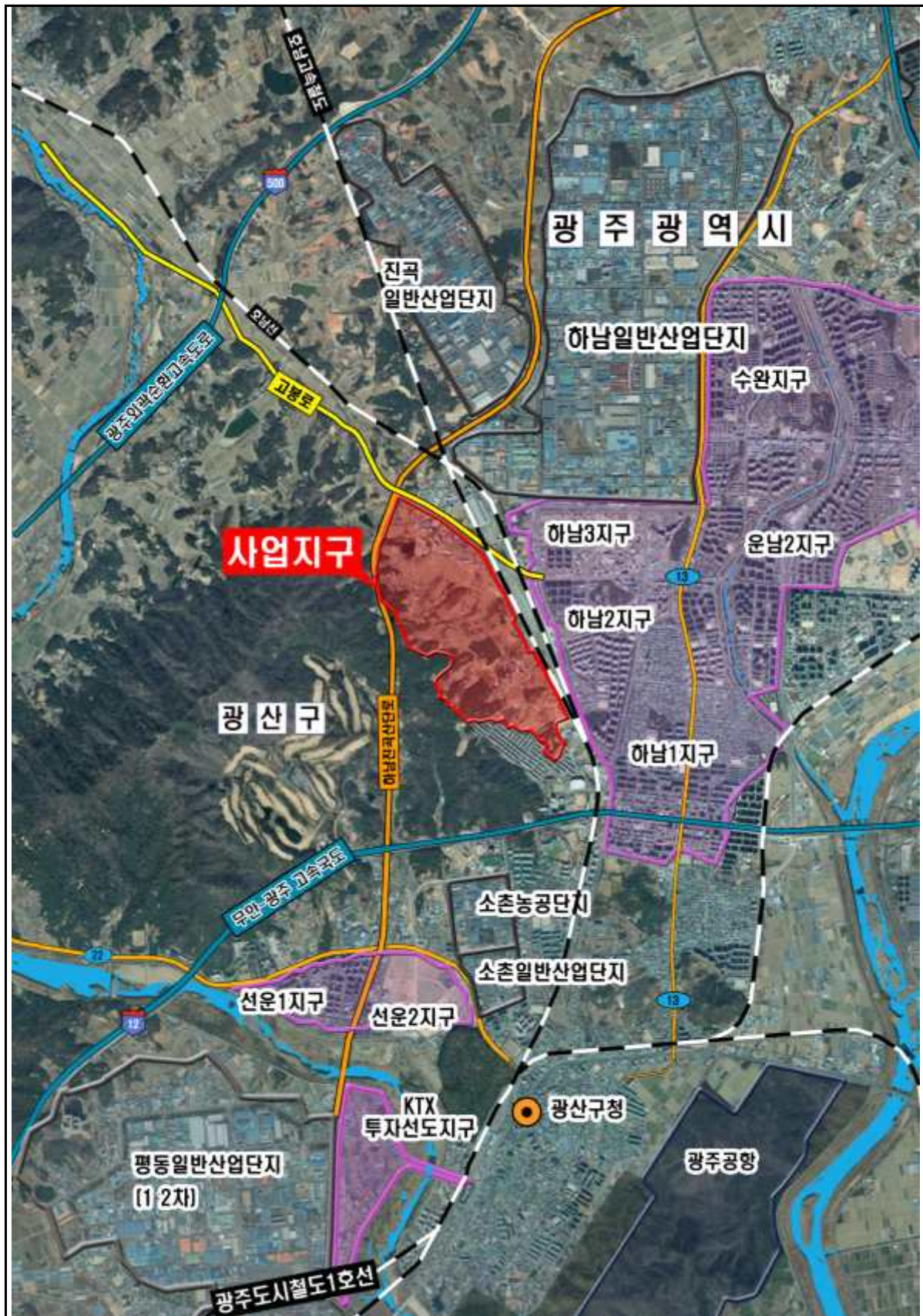
1.3.1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사업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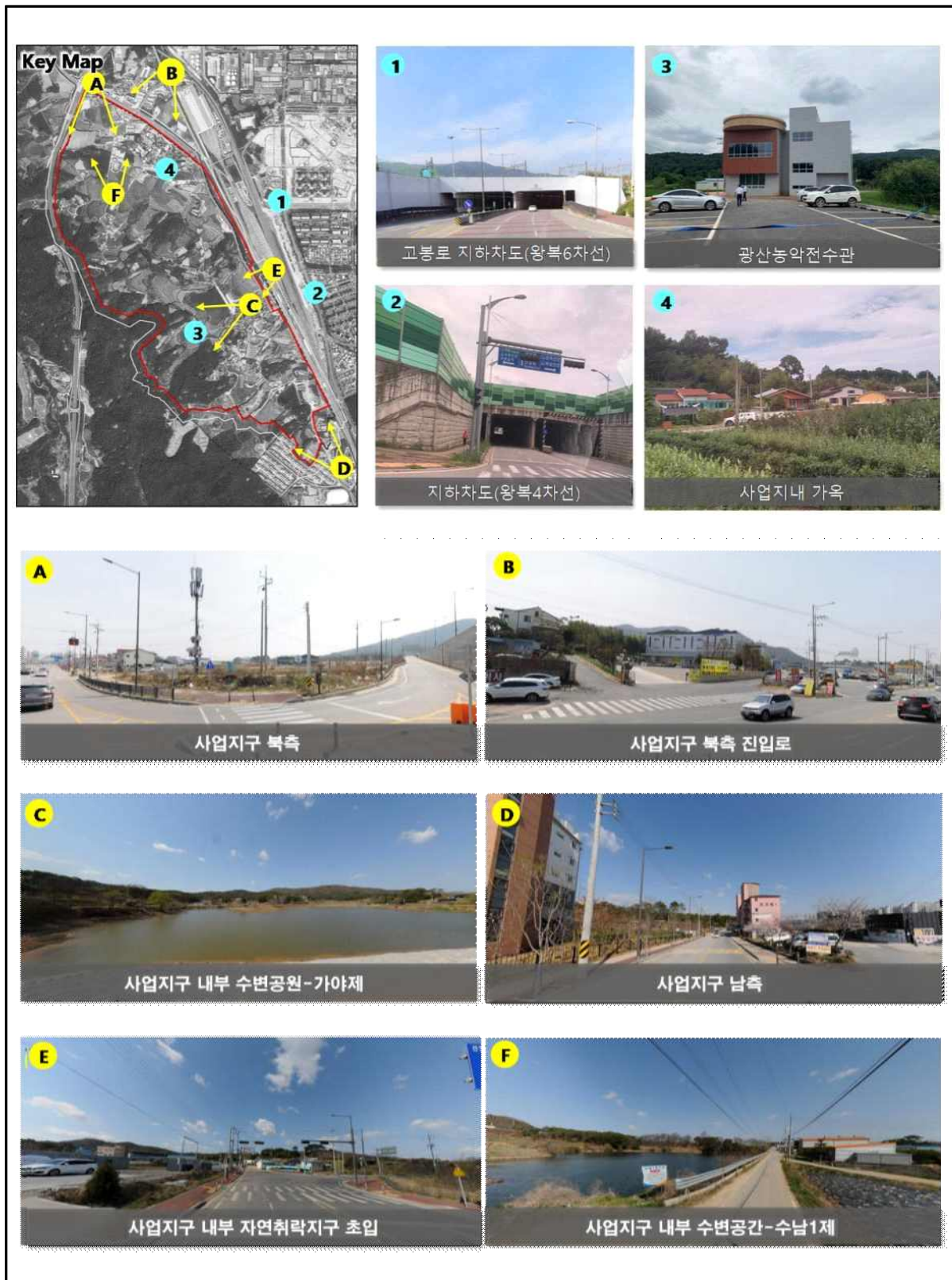
- 2021. 02.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2023. 07.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7호)
- 2024. 10. ~ 11.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나. 향후 계획

- 2024. 11. ~ 12.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025. 0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그림 1-1) 사업지구 위치도



(그림 1-2) 사업지구 주요 현황

1.3.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기관 /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부
- 사업규모 : 1,682,965m²
 - ※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 예정
- 계획인구 : 29,999인(13,631세대)
- 사업기간 : 2023년 ~ 2034년

제2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9조
- 주관 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3인[(국토교통부, 기후관련 전문가(감축·적응)]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4. 10. 24. ~ 2024. 11. 08.
- 결정사항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평가범위·평가방법 등
 -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하여 결정되었음(결정내용 공개기간 : 2021.06.28.~07.12)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성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금회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을 결정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평가 관계 법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규정 등 관련 고시에 따른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표 2의 평가항목을 고려해 기후변화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선정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175호, 2023.07.25., 환경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2-1〉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선정결과 및 사유

분야	평가항목	사유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공사시 장비투입, 운영시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 전략 방안 수립 및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현황,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현황 파악, 기후요소 대 기환경 및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변화폭 및 미래 전망을 조사하여 기후변화 영향예측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인자별 취약성 및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나.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 평가방법

- 본 개발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 · 간접적인 영향권과 장 · 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범위 · 평가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2-2〉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별 평가범위·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평가지점 (사업시행 전)	사업지구	-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 온실가스 배출시설, 온실가스 배출원 단위, 배출량, 저장 · 흡수량 현황 등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고려하여 산정 -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폐기물 - 온실가스 인벤토리 부문별 배출전망치 산정	—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방안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축목표, 감축 전략 및 방안 수립 - 사업 특성별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 검토 - 신·재생에너지 사용, 녹색건축물 적용, 공원 · 녹지율 향상,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 예측결과를 기초로 온실가스 저감방안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부문별 감축 방안 및 탄소 흡수 · 저장원 확대 -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목표 · 계획 등과의 정합성 검토 - 국가 및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저감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 및 준수 방안 제시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저감방안의 적정 이행여부 확인	—

(계속)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기후 위기 적응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현재(과거~현재), 가까운 미래(10~20년), 그 이후(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후변화 및 극한기후지수 현황 제시 ◦국가 기준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후요소, 극한기후지수에 대한 미래 전망 제시 -기후요소 : 기온, 강수, 습도, 풍속 등 -극한기후지수 :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 폭염일수 등 ◦발생빈도, 피해유형, 피해규모 등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기후변화 영향 및 피해사례 조사	-
	기후변화 영향 분석방안	현재(과거~현재), 가까운 미래(10~20년), 그 이후(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기후변화, 극한기후지수 현황 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예측·분석 ◦기후변화 위험요인 리스크 도출 (기후 인자 발생 주체별 취약성, 위험성 평가·분석)	-
	기후위기 취약성·위험성 분석 및 적응방안	현재(과거~현재), 가까운 미래(10~20년), 그 이후(30년 이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저감 전략 및 방안 수립 -효과·비용·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위험관리 불가시 예상 결과 제시 ◦국가 및 관할 지자체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과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성 고려	-
	사후환경 영향조사	공사시, 운영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적응대책 중 구조적 대책에 대하여 준공 시점 기준으로 조성여부 등 확인 ◦비구조적 대책에 대하여 사업 준공 시점부터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근거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에 의거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초안의 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2.3.1 주민의견 수렴계획

가.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그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및 공람

-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할 계획이며, 해당 지자체(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을 첨부하여 공고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기간 : 20~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초안 요약본
-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초안
- 해당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공람기간 동안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설명회 및 공청회

1) 설명회

가) 설명회 개최

- 개최시점 :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포함) 초안의 공람기간 내(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 일간 및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공고 : 초안 공고(일간 및 지역신문)시 설명회 개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9조(설명회의 개최)

-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설명회 생략

(1) 생략근거

-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정보통신망 게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 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

가) 공청회 개최

- 설명회 개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 개최요건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나) 공청회 생략

(1) 생략근거

-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청회를 생략

(2) 후속조치

(가) 신문공고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1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사업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마.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협의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가 30% 이상 증가 또는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의 요건에 부합하면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하겠음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